



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한시임기제공무원(비서) 채용 공고

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한시임기제공무원(비서)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2026년 6월 19일

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



01 임용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

임용분야 (근무예정부서)	비서 (의회사무국)
임용등급	지방한시임기제9호
임용인원	1명
근무기간	임용일 ~ 2027. 2. 28.
담당예정 직무	- 의원 의정활동 보좌 및 비서업무 수행 - 비서실 문서·일정·민원 관리 - 기타 의회업무 지원 등

※ 본 채용은 현 직원의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이며, 임용일에 따라 실제 근무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

※ 근무기간은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 1년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(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제21조의4제2항.)

02 법령 근거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5조의5(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)
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3조의2, 제17조(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요건), 제21조의3(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)
- 「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」
- 「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」

03 응시 자격 요건

가. 공통 응시자격요건 (기준일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)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)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
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
- 지역·성별: 제한 없음(남자의 경우 병역을 마쳤거나 또는 면제된 사람)
- 응시연령: 18세 이상
- 최종합격 후 기관이 정하는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사람

※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 및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의 세부 내용은 [붙임]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나.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(기준일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)

임용분야	응시자격요건
비서	•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* 임용예정 직무분야: 국가·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·민간기관 등에서 비서 관련 업무경력 (경력증명서상의 근무기간, 담당업무, 직위는 상세히 명시되어야 함) * 우대: 컴퓨터 자격증(컴퓨터활용능력, 워드 등) 소지자

• 실무경력 인정 범위 및 증빙

- 인정 대상: 국가·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 또는 민간부문(법인·단체)에서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력으로서 증명서로 증빙 가능한 경력
- 경력증명서상 담당업무·직무내용이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됨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,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

※ 경력기준은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(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17조제5항)

※ 응시자격 기준은 「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」 [별표 10]에 따름

※ 과거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(주40시간)에 비례하여 인정함

04 근무시간 및 보수 수준

- 근무시간: 주 35시간(주 5일, 09:00~17:00, 휴게 1시간 포함)
- 보수수준(월)

임용분야	직급	봉급기준액	주35시간 환산 봉급액
비서	지방한시임기제9호	2,346,300원	2,053,010원

- 연봉 외 수당: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별도 지급
 - ※ 봉급기준액은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제29조의4에 따라 「공무원보수규정」[별표 30의2] 기준(2026년)이며, 임용 시점의 보수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 환산액은 「지방회계법」제55조(끝수 처리)에 따라 10원 미만 절사
 - ※ 「공무원연금법」(2018. 09. 21.字 시행) 적용 →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재직기간 중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전부가 정지됨
 - ※ 「고용보험법」제1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최초 임용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(실업급여) 가입을 신청할 수 있음

0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

가. 응시원서 접수

- **접수기간:** 2026. 6. 25.(목) ~ 2026. 6. 29.(월) (09:00~11:30, 13:00~18:00)
- **접수방법:** 방문 또는 우편(등기)접수
 - 방문접수: 강동구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부착
 - 우편접수: 「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」제6조제1항 단서의 "그 밖의 방법"에 따라 정확한 금액의 현금을 응시원서와 함께 동봉 ※ 우편통상환증서 사용불가
 - 우편접수 시 채용담당자에게 사전 사후 유선 연락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(서류 및 수수료 분실 방지)
 - ※ 접수마감일자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 / 퀵서비스·택배 접수는 하지 않음
- **접수장소:**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사무국 의정팀 (2층)
- **우편주소:** (05397)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5, 강동구의회 2층 사무국 채용담당자
- **응시수수료:** 5,000원 (강동구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부착)

- ※ 수입증지 미부착 시 접수 불가. 다만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수급자 또는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보호대상자는 면제 가능 →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를 첨부 (인사규칙 제6조제3항)
- ※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음. 다만 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 반환.
- ※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별도로 통보 예정이며,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
- ※ 응시원서 등 제출 양식은 본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([붙임])을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
나. 시험일정(예정)

연번	내용	일정	비고
01	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	2026. 7. 10.(금)	추후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
02	면접시험	2026. 7. 17.(금) ~ 22.(수) 중	
03	임용후보자 발표	2026. 8월 중	

- ※ 합격자 발표·면접일정 등은 반드시 공고문을 통해 개별 확인 요망,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
- ※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·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
- ※ 임용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
다. 시험방법

• 1차시험(서류전형): 개별통보 및 강동구의회 홈페이지 공고

-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적격 여부를 서면 심사
-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합격자 결정 가능
(「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」 제13조제2항)

• 2차시험(면접시험): 개별통보 및 강동구의회 홈페이지 공고

- 1차(서류전형)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
- 심사항목: 다음 5개 평정요소로 평가(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)
 -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
 - ④ 예의·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
- 심사기준: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(7점 이상), 중(4~6점), 하(3점 이하)로 평정

※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"하"로 평정하였거나,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"하"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

• 최종합격자 발표: 개별통보 및 강동구의회 홈페이지 공고

- 면접시험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임용후보자 결정
 -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·합격취소·임용결격 등으로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,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- ※ 추가합격자는 채용기간(~ 2027. 2. 28) 내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

06 제출서류

- ☐ 응시원서 1부 (첨부 서식)
- ☐ 이력서 1부 (첨부 서식)
 - 이력서 기재 경력은 경력증명서 증명 가능 경력만 인정
- ☐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(첨부 서식)
- ☐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1부 (첨부 서식)
- ☐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(첨부 서식)
- 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(첨부 서식)
- ☐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
 - 근무기간·직위·직급·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되, 담당업무는 응시자격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범위 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 (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)
 - 경력증명서에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 기재가 어려운 경우 '경력사실 확인 증명서' 추가 제출
 - 시간제 근무경력은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빙자료 제출
 - 제출서류의 직무내용 등이 불명확한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

- 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
 -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(고용보험)에서 발급
- ☐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
 - 졸업증명서에 학위 취득 사실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학위증서 사본 1부 추가 제출
 - 대학원 이상 졸업자는 대학교·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
 - 사본 제출 가능(최종합격 시 원본 대조 확인용 제출)
- ☐ 기타 응시자격 입증서류(자격증 사본 등) 각 1부
 -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(학력증명서·경력증명서 등)는 한글 번역본(공증필)을 반드시 첨부
 - 폐업기관 경력은 ①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(국세청 홈택스 발급)와 ②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류(고용·국민연금·건강·산재보험 중 1개)를 모두 제출

※ 임용후보자 등록 시 기본증명서,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및 관계 법령상 임용 구비서류 제출(인사규칙 제31조)
 ※ 제출서류 중 확인이 불분명한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,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

-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, 시험일정 등 공고문의 내용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 두 분야에 동시 지원할 수 있으나, 시험일정(서류전형·면접시험 등)이 중복될 경우 일정 조정은 불가하며 응시자가 택일하여 응시하여야 합니다.
- 응시원서에 E-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)
-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각종 증빙서류는 사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, 최종합격자는 원본과 대조 확인 절차를 거칠 예정이므로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 원본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 이내에 채용담당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반환 청구가 없는 제출서류는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우리 구 기록관리기준에 따라 보존·관리한 후 파기하며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습니다.
- 서류전형에 합격한 사람이라도 면접 결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,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에 따라 부정행위·허위서류 제출 시 시험 정지·무효 또는 합격 취소되고, 처분일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.
-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(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합니다.
- 제출된 서류는 본 채용 목적으로만 활용되며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처리·보관 후 파기됩니다.
- 본 채용은 강동구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 명의로 공고하며, 최종합격자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강동구의회이장이 임용합니다.
-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강동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- 기타 상세 내용은 강동구의회 사무국 채용담당자(☎02-3425-7366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. 응시원서·이력서·자기소개서·직무수행계획서 등 서식 각 1부

2. 「지방공무원법」제31조 및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제65조 발체 1부. 끝.